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454
-----------	------

2026년 6월 17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김기덕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6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1. 제안이유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로 마련된 방과후·돌봄과 관련하여, 현재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원하는 시간에 맡겨 교육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 운영 중
- 서울시교육청 역시, 정책적 흐름에 맞춰 교육부, 서울시 등과 방과후

· 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해 추진 및 지원 중임

- 다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별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적 돌봄에 기반한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라. 평가 등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교육연수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및 9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454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명문화하여 공교육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의 일환¹⁾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은 1990년대 방과 후 학교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방과후 학교’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돌봄교실’, 2017년에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4년부터는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 제공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음.

[표-1] 방과후·돌봄 서비스 정책 변천²⁾

정책명	방과후학교 (’96~)	초등돌봄교실 (시범사업 ’04~)	온종일 돌봄체계 (’17~)	늘봄학교 (시범’23, 전면’24~)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주요 내용	방과후에 학교 중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에 학교 중심 돌봄 프로그램 제공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공간·시간 확대	학교 돌봄·교육 프로그램 통합 및 초1:2 집중 지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제공 및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 교육 참여

-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교육부는 2026년 2월 「온동네 초등돌봄·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통해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로 개편하고,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기존에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돌봄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게는 방과후 교육 참여 확대

1) 「이재명정부 123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https://www.korea.kr/govVision/> 2026.3.6. 방문, 누리집 자료 참조)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그램·강사 검증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체계 확립

-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하고, (가칭)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하여 돌봄·교육의 질 제고.

2)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교육부, 2026.2.교육부(초등교육과-20714, 2025.11) 「2026년 제1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온동네 돌봄·방과후지원 사업계획」 1p

를 위한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돌봄과 교육을 연계한 정책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³⁾.

○ 이러한 정책변화에 맞추어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6학년도부터 기존 ‘늘봄학교’ 명칭을 ‘방과후·돌봄’ 체계로 재정비⁴⁾하고, 맞춤형 교실·방과후교실·돌봄교실로 운영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정책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용어 사용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⁵⁾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26년도 늘봄학교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바 있음.⁶⁾

3) 교육부, 2026.2.3., 「2026년 운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국정과제 101-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

< 운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구분	'25년	'26년
돌봄 참여 지원	학교 중심(일부 지역에서만 학교-지역 협력), 초1·2 집중 지원	학교-지역사회 유기적 협력, 초1·2 집중 지원 + 초3 이상 사각지대 해소*
무상 프로그램	안정적 참여 시간(매일 2시간) 보장 중심, 초1·2 집중 지원	초3 프로그램 선택권(연 50만원) 강화, 초1·2는 기존 방식으로 지원
안전 관리	귀가 안전 관리, 프로그램 등 검증·관리	안전 관리 지속 강화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3p

5) 다만 학교에서는 ‘늘봄’, ‘늘봄교실’ 등 기존 명칭 유지 또는 특색을 살린 명칭이 병용하여 사용 가능함.

6) 서울시교육청 자료 제공(초등교육과), 2026.2.6. 「늘봄학교 명칭 설문조사 결과 보고」

※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경우를 발췌 정리한 것임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 맞춤형교실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 방과후교실	선택형 돌봄 → 돌봄교실
전체(12,723)	7,614(59.8%)	6,399(50.3%)	10,909(85.8%)
학부모(9,129)	5,506(60.3%)	4,725(51.8%)	7,749(84.9%)
교직원(3,594)	2,108(58.7%)	1,674(46.6%)	3,160(87.9%)

[표-2] 2026년도 돌봄 관련 용어변경7)

기존		2026년	내용
늘봄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후·돌봄	맞춤형교실 ※초1~2학년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방과후교실
	선택형 돌봄		돌봄교실
			초 1,2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으로 편성(매일 2차시, 무상)하여 무료 프로그램 운영
			초 1~6학년을 대상으로 학부모·학생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편성하여 수익자부담으로 프로그램 운영
			별도의 공간(돌봄교실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초1~6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및 자율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 한편 최근 저출생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8)에 있으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초·중·고등학생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 돌봄교실 참여율은 2022년 11.3%에서 2025년 14.0%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9),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또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평균 9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10)

○ 이와 같이 방과후·돌봄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제도적 근거 없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을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는바,

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3p

8) 학령인구(6-21세) - 국가통계털(KOSIS) 2026.2.6. 전국 기준(추정치 반영)

(단위 : 천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초등학교(6-12세)	399	383	365	342	321	296	270	249	230
중학교(13-15세)	209	204	206	207	199	194	189	181	167
고등학교(16-18세)	209	212	212	208	204	205	206	199	194
대학교(19-21세)	382	360	349	334	326	321	320	321	316

9) ※ 돌봄교실 참여율: ('22년) 11.3% → ('23년) 12.3% → ('24년) 13.6% → ('25년) 14.0%, [서울특별시교육청(2026).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8p] 참조

10) ※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만족도: ('23년) 96.7% → ('24년) 96.3%, ('25년) 96.2%), [서울특별시교육청(2026).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8p] 참조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방과후·돌봄 정책은 장기간 국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며¹¹⁾, 정책 운영 역시 주로 교육부의 지침이나 시·도교육청의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방과후 교육과 돌봄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체계 자체가 아직 정착 단계에 있음. 실제 2024년부터 시행된 ‘늘봄학교’ 정책은 시행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명칭과 운영 방식이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¹²⁾’ (2025년 12월) 및 ‘온동네 초등돌봄·교육¹³⁾’ (2026년 2월)으로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어 정책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정책 체계를 선제적으로 규정할 경우, 향후 제정될 법률이나 교육부 정책 방향과 내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정책 용어 또는 사업 구조가 변경될 경우 조례의 개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재 방과후·돌봄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는바, 향후 관련 법률 제정 여부와 교육부 정책 방향이 보다 명확히 정립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1) [2000687]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등 17인, 2016.07.06. 제알, 2020.5.29. 임기만료 폐기)

[2004265]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2016.12.08. 제안, 2020.5.29. 임기만료폐기)

12) 한국교육개발원(2025.12.).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13) 교육부(2026.2.).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의 입법적 불비에 대한 지적을 고려하여 동 조례의 제정에 관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관리담당관-2277, 2026.2.20.)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방과후·돌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과정 및 지역 유관 기관 연계, 안전 강화, 급·간식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제고하려는 입법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우수사례 홍보, 정부·지자체·학교 등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공로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담고 있음.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돌봄 거버넌스를 강화하

여 사업의 안착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동 조례안의 전체 조문 구성과 체계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입안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일부 사항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목적에 관한 검토(안 제1조)

- 안 제1조는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1)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2) 방과후·돌봄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사항을 동시에 규율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방과후·돌봄 사업계획, 운영방식(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등), 대상자 모집 및 운영 관리 등은 모두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¹⁴⁾,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제작 및 배포, 강사 수급 등을 위한 인력풀 제공¹⁵⁾ 등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이는 교육부의 운영 지침 및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주체별 역할(학교의 운영, 교육청의 지원)을 조례상에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향

14) 늘봄허브(교육부 제공),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12p, 초등돌봄·교육편성·운영절차와 내용 중 단위학교의 역할 참조

15) 교육부,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14p, 외부강사 등 운용 및 관리 중 1번 항목
-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 강사는 교육부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강사인력풀 활용, 관련 누리집을 활용한 공고, 평가·선정한 외부강사(개인/기관·단체)와 위·수탁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후 방과후·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려는 취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임. 이 중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학교’와 ‘학생’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조례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방과후’ 및 ‘초등돌봄’ 사업의 대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초등학교 조례안의 제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표기되어 있어, 문언상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급(초·중·고)을 포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제명에서 시사하는 범위와 실질적인 정의 규정상의 적용 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명 수정이나 정의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2조제3호의 ‘방과후·돌봄’ 용어에 대한 정의는 교육부가 고시하는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상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명명한 것임.¹⁶⁾

16) 동 검토보고서에서는 조례안에서 규정한 ‘방과후·돌봄’으로 검토함.

-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는 돌봄 및 교육 서비스의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정책 명을 함께 변경해왔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돌봄의 사업명 또한 명확한 상위법령이 제정되기까지는 잠재적으로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3] 교육부 돌봄·교육 서비스 정책 변천¹⁷⁾

정책명	방과후학교 (’96~)	초등돌봄교실 (시범사업 ’04~)	온종일 돌봄체계 (’17~)	늘봄학교 (시범’23, 전면’24~)
주요 내용	방과후에 학교 중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에 학교 중심 돌봄 프로그램 제공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공간·시간 확대	학교 돌봄·교육 프로그램 통합 및 초·1·2 집중 지원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늘봄학교 명칭 설문조사」에서는 ‘방과후·돌봄’ 으로의 변경과 기존 유지를 선호하는 입장이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표-4] 늘봄학교 명칭 관련 선호도 조사¹⁸⁾

구 분	방과후·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기존유지	기타	계
전 체	5,025(39.5%)	1,971(15.5%)	5,082(39.9%)	645(5.1%)	12,723
학부모	3,608(39.5%)	1,304(14.3%)	3,725(40.8%)	492(5.4%)	9,129
교직원	1,417(39.4%)	667(18.6%)	1,357(37.8%)	153(4.2%)	3,594

- 즉,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명칭의 변경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체감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바, 자치법규를 통해 성급하게 용어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수용가능성을 전제로 향후 국가 법령 제정 추이와 연계하여 용어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7) 교육부(초등교육과-20714, 2025.11) 「2026년 제1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온동네 돌봄·방과후지원 사업계획」 1p, 1)동일

18) 서울시교육청 자료 제공(초등교육과), 2026.2.6. 「늘봄학교 명칭 설문조사 결과 보고」 5번 문항

4)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돌봄 사업의 주체인 교육감이 시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책무를 부여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하는 규정임.
- 구체적으로는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책무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제1항·제2항),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운영과 안전한 환경 조성(제3항·제4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질적 내실화와 학생 안전을 도모하려는 교육청의 정책적 의지를 자치법규 차원에서 적절히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는 방과후·돌봄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학교장’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위학교에서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실제 인력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등 세부 운영 사무가 학교장의 지휘·감독하에 수행되는 현장 실정을 고려할 때, 안 제3조에 ‘학교장’의 관리·운영 책무를 별도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과후·돌봄 운영의 방향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안 제3조는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책무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이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책무 조항을 신설하거나,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조문 내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방과후·돌봄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구체적으로 안 제4조제1항은 방과후·돌봄의 운영 방향 및 목표(제1호), 맞춤형 과정 운영(제3호), 전담 인력 연수(제5호), 시설·설비 지원(제7호) 등 정책 수행의 전 과정을 명문화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안 4조제2항은 운영 실적 평가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차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조문의 체계 및 구성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한 검토(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와 제6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돌봄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에 관하여 일부 용어의 정의와 입법 체계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가. 안 제5조제1호 '방과후·돌봄 운영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¹⁹⁾는 국가가 정한 법정 교육활동을 「교

19)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

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성격이 다른 방과후·돌봄 사무와 연계하는 것은 각 용어의 법적·개념적 관계를 혼선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선택적 교육활동인 ‘방과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진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한하여 수준별 강의만 제공²⁰⁾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일부 연관성이 있음.
- 반면에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는 ‘돌봄’ 사무는 「교육과정」연계의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으나 그 기능적 역할이 정규 교육과정의 학업적 성취와는 엄연히 구분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이미 돌봄을 위해 늘봄지원실장, 돌봄전담사,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인력 등 다양한 돌봄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돌봄’ 운영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자칫 이들에게 법정 교육활동의 보조적 책무를 지우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결국 학교 현장에 학업적 부담을 전이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직무 범위에 대한 개별 해석은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업무 갈등을 심화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례상 용어의 채택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본계획상 명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방과후·돌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²¹⁾ 등의 표현으로 수정

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과정은 동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1항에서 학력인정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동법 제58조)는 점에서, 학업과 연관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20)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251p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 제한 참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안 제5조제5호에 따른 '연수 지원'의 대상에 관한 검토

- 안 제5조제5호는 방과후·돌봄 운영 사업의 범위 중 하나로 “방과후·돌봄 운영 인력 연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조례안은 조문 전반에서 방과후·돌봄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관하여 ‘방과후·돌봄 운영 인력’, ‘전담 인력’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안 제4조제5호와 안 제8조에서는 ‘전담 인력’, 안 제5조제5호에서는 ‘운영 인력’ 등 동일한 정책 대상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실정임.
- 이는 수범자로 하여금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조례의 내용적인 통일성과 명확성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에서 일부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5조제5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 인력’은 안 제4조제5호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전담 인력’ 등으로 정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안 제5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검토

- 안 제5조 제2호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제3호는 운영 안전 강화, 제6호는 그밖에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각 호의 내용은 명확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21)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방과후·돌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

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안 제6조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검토

- 안 제6조는 방과후·돌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책의 자기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안 제6조의 내용은 이미 안 제4조제2항에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자치법규 입안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 경제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동일 내용의 조문이 중복적으로 규정된 안 제6조는 조례 입안의 효율성을 위해 삭제하거나, 제4조제2항과 통합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위탁에 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교육감이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민간위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22)에 근거하여 제정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되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생략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²³⁾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단순 행정 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일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안 제7조에서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감에게 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방과후·돌봄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비해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돌봄전담사’, ‘늘봄지원실장’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바, 향후 동 조항에 따라 방과후·돌봄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생략

사료됨.

- 한편,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육을 위해 위탁 운영에 관한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돌봄 운영 관련한 위탁 방식은 ‘개인위탁’ 과 ‘업체위탁’의 2가지 형태가 대부분이며, 이는 주로 단위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표-5]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 주요 유형²⁴⁾

유형	내용	
개인위탁	단위학교별로 선정된 개인강사·희망 교원·교육기부자 또는 중앙·지역단위 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체위탁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부위탁	전부위탁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프로그램 중 일부를 업체에 위탁 운영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체 프로그램을 일괄 위탁하여 운영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탁 방식은 단위학교에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등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²⁵⁾을 강사로 계약체결 하는 ‘개인위탁’ 형태와 「지방계약법」에 따라 학교장이 계약 주체가 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위탁’ 방식임.²⁶⁾

-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돌봄 운영 관련한 위

24)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153p,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 부분을 표로 정리하였음.

25) 「고용보험법」 노무제공자 성격(「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154p)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생략

26)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154p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 부분 중 3.업체위탁 참조

탁은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집행하는 ‘단위학교 중심의 계약 사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에 의한 민간위탁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강사 위탁이나 업체위탁과 같은 단위학교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기보다는 지역사회 돌봄 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연계 운영’ 형태의 위탁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 따라서 동 조례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돌봄 사업의 위탁 구조와 보다 명확하게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제7조에서 규정한 교육감 단위의 민간위탁과는 별도로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개인위탁 및 업체위탁 등 학교 단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도 추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8) 교육·연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검토(안 제8조~제10조)

-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방과후·돌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교육·연수)는 운영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조치로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앞서 안 제4조(기본계획) 및 안 제5조(사업)에서 이미 전담 인력 등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내용이 여러 조문에 걸쳐 반복되는 것은 자치법규의 체계적 간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조문간 정리가 필요함.

- 안 제9조 및 제11조는 각각 방과후·돌봄 정책의 인지도 및 운영 성과 제고 등을 위한 보조적 규정임.
 - 안 제9조는 우수사례 홍보와 캠페인 추진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나 기관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은 홍보 및 포상 체계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학 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의미를 가진 노력인바, 그 규정 취지는 옳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담고 있음.
 - 이는 교육부의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에서 강조하는 ‘국가-지자체-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유기적 협력망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조문으로 생각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방과후·돌봄”의 적용대상을 ‘초등학생’으로 명확히 하고자 조

례안 제명과 목적을 수정함(제명, 안 제1조).

- 방과후·돌봄 관련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노력 의무를 신설함(안 제3조).
- 중복된 평가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교육감이 시행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제6조 제2항단서 신설).
- 기타 용어 정비와 조문 순서를 정비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54
----------	------------

제안연월일 : 2026년 6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방과후·돌봄” 정책이 상위 법령상 명확한 위임이나 정의 없이 지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자치법규로서의 명확성과 행정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명 및 목적의 적용 범위를 한정함.
- 또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구체화하고 단위학교 사무에 대한 위탁의 예외를 규정하며, 중복적인 내용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방과후·돌봄”의 적용대상을 ‘초등학생’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의 제명과 목적을 수정함(제명, 안 제1조).
- 방과후·돌봄 관련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노력 의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5항)
- 중복된 평가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제6조제2항단서 신설).
- 기타 용어 정비와 조문 순서를 정비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방과후·돌봄”을 “초등 방과후·돌봄”으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교육감의 책무)”를 “(교육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학교장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학생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 제5조제5호 중 “운영 인력”을 “전담 인력”으로 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과후·돌봄의 운영을 위한 계약 등 단위학교 사무는 제외한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u>방과후·돌봄</u>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u>방과후·돌봄</u>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5조(사업) 교육감은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방과후·돌봄 <u>운영 인력</u> 연수 지원</p> <p>6. (생략)</p> <p>제6조(평가 등) 교육감은 방과후·돌봄</p>	<p>서울특별시교육청 <u>초등 방과후·돌봄</u>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 - <u>초등 방과후·돌봄</u>----- ----- ----- ----- -----.</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①~④(원안과 같음)</p> <p>⑤ <u>학교장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학생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u></p> <p>제5조(사업) ----- ----- -----.</p> <p>1. ~ 4. (원안과 같음)</p> <p>5. -----<u>전담 인력</u>-----</p> <p>6. (원안과 같음)</p> <p><삭 제></p>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방과후·돌봄”이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학습지원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이주배경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돌봄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후·돌봄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학생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2.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 체계 및 전략 구축
3. 학교별·대상별 맞춤형 방과후·돌봄 과정 운영 및 지원
4. 방과후·돌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
5. 방과후·돌봄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연수 실시
6.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례발굴
7.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지원
8. 그 밖에 교육감이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과후·돌봄 운영의 교육과정 연계
2. 방과후·돌봄 운영의 지역 유관기관 등 연계
3. 방과후·돌봄 운영 안전 강화
4. 방과후·돌봄 급식비·간식비 지원
5. 방과후·돌봄 전담 인력 연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방과후·돌봄의 운영을 위한 계약 등 단위학교 사무는 제외한다.

제7조(교육·연수) 교육감은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방과후·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각종 행사·캠페인 추진 등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방과후·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방과후·돌봄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